

Client Alert

November 2017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십시오:

Adeline Wong
Partner
+603 2298 7880
adeline.wong@wongpartners.com

Dato' M. Arief Emran bin Arifin
Partner
+603 2298 7925
ariefemran.arifin@wongpartners.com

Jason Liang
Senior Associate
+603 2298 7983
jason.liang@wongpartners.com

Kellie Allison Yap
Associate
+603 2298 7923
kellieallison.yap@wongpartners.com

Rhu Vern Ang
Tax Manager
+603 2299 6517
rhuvern.ang@wongpartners.com

Soyeh Ki (기 소 예)
Korea Desk Senior Manager
+603 2299 7903
soyeh.ki@wongpartners.com

판례법 (Case Law) 업데이트: 물품 및 서비스세법 2014 (Goods & Services Tax Act 2014)

- 소지하던 물품의 판매세 특별 환급

도입

말레이시아에 물품 및 서비스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 제도는 2015년 4월 1일에 도입되었습니다. GST 제도 도입 전, 말레이시아 관세청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RMCD")은 판매세 (Sales Tax Act 1972, "STA")를 근거로 일부 수입 물품과 현지에서 제조된 물품에 판매세를 징수했었습니다. 판매세 제도하에서 기업은 일부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선납부해야 했습니다.

GST 제도의 도입 직후, 판매세를 선납부한 수입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과세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할 때 GST를 포함해야 하는 이슈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잠재적 이슈를 인지하여 GST 법에 유예조항을 포함시켜 이 문제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GST 법의 190 조항은 과세자가 2015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판매세를 선납부하고 소지하고 있었던 물품들에 대해서는 납부한 판매세 금액의 총합을 환급해 줄 것을 규정합니다.

최근 Wong & Partners는 GST 법 190 조항을 근거로 관세청장에게 판매세 환급을 신청한 한 과세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신청이 GST 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에도 관세청장은 환급을 불허했고, 과세자는 관세청장의 환급 불허에 반해 Judicial Review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관계

과세자는 판매세를 선납부하고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판매세 환급을 규정하는 GST 법의 190 조항을 근거로 관세청장에게 특별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관세청장은 사유를 제공하지 않은 채 환급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레터를 이슈하여 전달했습니다. 관세청장의 불허 사유를 알고자 하는 과세자의 추가 시도들에도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세자는 Judicial Review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Judicial Review 과정에서, 관세청장은 과세자가 물가통제 및 가격인상금지법 2011 (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Act 2011, "PCAP 법")의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과세자의 특별 환급 신청을 불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장은 과세자가 물품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점을 (판매세 제도에서



판매세는 10%였고, GST 제도에서 GST 는 6%인 것을 고려) 근거로, 과세자의 세금 환급 불허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과세자는 이 혐의를 부인했으며 관세청장이 PCPA 법의 조항을 (말레이시아 내수경제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 이 관할))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관세청장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주장했습니다:

- (a) 첫째, 특별 판매세 환급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은 GST 법의 190 조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PDAP 법의 준수는 환급을 위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청장은 GST 법에 분명히 제공되지 않은 추가 요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관세청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b) 둘째, PCAP 법의 관할권은 말레이시아 내수경제부에 있지 관세청장에 있지 않습니다. 과세자의 가격 인상 여부는 관세청장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내수경제부에서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청장은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 및 결론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구두로 전달할 때, 과세자 승소로 판결을 내렸고 위에 언급된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동 사례는 중요한 GST 사례이자 이런 종류의 첫 사례입니다. 고등법원은 관세청장은 GST 법의 테두리안의 권한을 갖는다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GST 와 관련된 기능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Wong & Partners 에게 있습니다. 부분 혹은 전문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7 Wong & Partners. All rights reserved. Wong & Partners is a member of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a Swiss Verein with member law firms around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common terminology used in professional service organizations, reference to a "partner" means a person who is a partner, or equivalent, in such a law firm. Similarly, reference to an "office" means an office of any such law firm.

This may qualify as "Attorney Advertising" requiring notice in some jurisdictions.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a similar outcome.